

진료과목	질병군(DRG)번호	병실	환자구분	영수증번호(연월-일련번호)
비뇨의학과	101 -1	비급여	국민건강보험	202601-70476
항목	급여		급여산정내용	
	일부 본인부담금	전액 본인부담금	⑥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)	
진찰료	3.768	15.072	⑦ 공단부담 총액 (②+⑤)	
1인실			⑧ 환자부담 총액 (①-⑤)+③+④	
2·3인실	6.862	27.448	⑨ 이미 납부한 금액	
4인실이상			⑩ 납부할 금액 (⑧-⑨)	
행위료			카드	
투약 및 조제료			현금영수증	
행위료			현금	
약품비			합계	
마취료			납부하지 않은 금액 (⑩-⑪)	
치치 및 수술료			신분확인번호	
검사료	95.621	382.487	현금인번호	
영상진단료			13,200,000	
방사선치료료			*요양기관 임의활동공간	
치료재료대			급여 초음파는 검사료에 합산됩니다.	
재활 및 물리치료료				
정신요법료				
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				
CT 진단료				
MRI 진단료				
PET 진단료				
초음파진단료				
보철 교정료				
제증명수수료				
선별급여				
65세 이상 등 정액				
정액수거(요양병원)				
정액수거(완화의료)				
포괄수가진료비				
기타				
합계	① 106,250	② 425,000	③ 0	④ 13,200,000
상한액 초과금	⑤ 0			
요양기관 종류	[V]의원급·보건기관 []종합병원, []중환병원, []상급종합병원			
사업자등록번호	1619701551	상호	감동비노기과	전화번호
사업장 소재지	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9 (잠원동) 신사역 멀버리힐스		대표자	임지석 [인]
메디칼단위 10층		출력일자: 2026년 04월 07일		

항목별 설명

1. 일부 본인부담: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, 요양기관 지역, 요양기관의 종별,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- 외래 본인부담률: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% ~ 6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~ 2500원 0% ~ 15%) 등
 - 입원 본인부담률: 2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% ~ 10%) 등
 ※ 식대: 50%(의료급여는 20%)
 CT*MRI*PET: 외래 본인부담률(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)
 2. 전액 본인부담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5 또는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(의료급여)에서 금액을 청구하였으나, 진료비, 제약을 초과, 부의이 부담합니다.

일반사항 안내
 1. 이 계산서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 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의2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1644-2000, 홈페이지: www.hira.or.kr)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 3. 계산서*영수증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의료비 공제 신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(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.)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

